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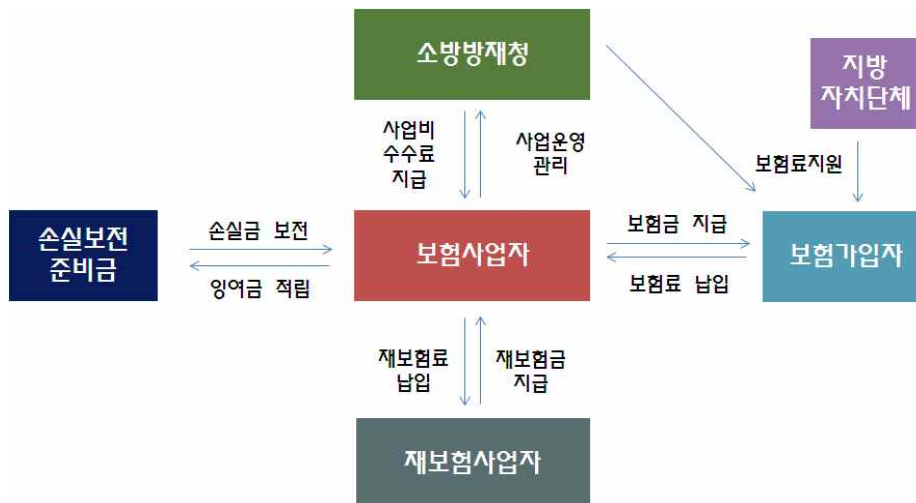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이해 (17): 정책성보험 - 풍수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풍수해보험(Storm and Flood Insurance)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임.<sup>1)</sup>

- 풍수해보험제도는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고 2006년 5월부터 전국 9개 지역<sup>2)</sup>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풍수해보험사업의 경우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임.

〈그림 1〉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체계



자료: 소방방재청(2011), 2011년도 풍수해보험실무.

- 1) 풍수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으로는 풍수해보험법(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를 들 수 있음.
- 2)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 2013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해 민영보험사를 통한 민영재보험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보험리스크를 분산시킴.<sup>3)</sup>
  - 풍수해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편차가 커서 보험리스크를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sup>4)</sup>
  - 풍수해보험법 제20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함.
- ■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지역별 피해율, 구조물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태임.
-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영업보험료<sup>5)</sup>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sup>6)</sup>
  -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28~35%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90%를 정부가 지원함.
  -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 풍수해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로 구분이 되며,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풍수해보험 I,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상품), 풍수해보험 III(공동주택 실손형 상품) 등이 있음.
- 풍수해보험 상품 I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에 대한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으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임.
  - 풍수해보험 상품 II는 동산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정액 보상형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할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임.
  - 풍수해보험 상품 III은 주택 중 공동주택<sup>7)</sup>에 한해 실손 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임.

3) 농작물재해보험에서와 같이 손해를 180% 이하의 통상적인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민영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나, 손해를 180% 이상의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줌.

4) 손실보전준비금이란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에 대한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조성하는 적립액으로, 결산상 손실액이 발생할 때에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충당하고 재원부족 시 재해대책 예비비 등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5) 영업보험료란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86.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7)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함.